

## 제 3회 행정절차론 모범답안

[문제1] A시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시민공원을 설치하여 24시간 무료개방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원에서 범죄와 무질서행위가 증가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A시의 시장 甲은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甲의 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하여 논하시오.(40점)

###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1) 공개된 장소의 원칙적 설치·운영금지

누구든지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목욕실 등 내부의 설치·운영금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위 사안의 경우

공원 출입문, 산책로 등은 공개된 장소로서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화장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므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3. 안내판 설치의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목적 외 조작·투시 및 녹음기능사용금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5.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문제2] 행정절차법상 청문 주재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 1. 청문의 의의

의견청취과정 중 하나로서 행정절차법은 청문을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 2. 청문 주재자

##### (1) 청문주재자의 선정 및 신분상 지위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사람이 주재하되,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된 청문 주재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 청문자료 사전 송부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3)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공정성 확보 제도)

특정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 등을 그 심리 등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청문 주재자가

##### 1) 제척

- ①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② 자신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 ③ 자신이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④ 자신이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 2) 기피

제척원인이 있는 청문주재자가 제척되지 않고 청문에 참여하는 경우가 반드시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처럼 청문에 참여한청문 주재자에게 제척사유 등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3) 회피

회피란 청문주재자가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청문절차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청문 주재자는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 3. 청문진행시의 주재자의 역할

### (1) 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청문의 개시 및 진행

1)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2) 질서유지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3)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 4) 청문의 계속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 5) 청문의 병합·분리

행정청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여러 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할 수 있다.

### (3) 증거조사

#### 1)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조사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2)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4) 청문의 종결

#### 1) 청문의 종결사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 2) 청문종결후의 조치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3]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행정조사의 의의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조사의 사전통지 (17조)

(1)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 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21조)

- ① 조사대상자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조사의 연기신청(18조)

-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문제4]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1.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1) 본인의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 2)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2) 회수 및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우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 2) 주민등록증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 (3) 수수료 징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 2)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2)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 기준·방법 및 절차, 관계 공무원의 방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